

제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제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주요 업무
제주아트센터 (무대안전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 공연장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 공연장 및 출연자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 무대 운영 및 공연 진행 관련 사항 ○ 무대기계감독 업무지원 등

2. 임용(계약)기간

임용예정 분야	임용(계약)기간	비 고
무대안전관리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하며,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3.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자(2008.12.31.이전 출생자)
 - ※ 응시연령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8조(응시연령)에 의거함
- 주소지 · 성별: 제한 없음
 -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나.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자 격 요 건
무대안전 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p>※ 『공연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3급 이상) 소지한 자 중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p> <p>< 경력요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연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시설, 국·공립 예술단 또는 전문예술단체(법인) 등에서 무대안전관리, 무대기계 운영, 무대감독 경력(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함)</p>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및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다자녀양육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제10항)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

* 예시) 4년간 주 20시간 근무: 4년 × (주 20시간 / 주 40시간) = 2년 경력 인정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 5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 분	기 간
원서접수	2026. 6. 4.(목), 6. 5.(금), 6. 8.(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 6. 16.(화) 전·후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자·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최종 확인**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제주시 홈페이지(<https://www.jejudi.go.kr>) 접속 → 정보공개 → 제주시소식 → 채용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보수 수준

근무부서 (임용예정분야)	임 용 예정직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보수수준(연봉액)		비고
				상한액	하한액	
제주아트센터 (무대안전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1명	1년	61,935천원	43,988천원	하한액 책정 (주 35시간 기준)

-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
-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

8.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6. 6. 4.(목) ~ 2026. 6. 8.(월) (3일간, 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제주시 총무과 인사팀(본관 2층, ☎ 064-728-2063)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접수 :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 ▷ 방문접수: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
 -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2026. 6. 8.) 18:00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해 유효
 - ※ 응시자는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전화(064-728-2063)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함
- ▷ 우편봉투 겉면에 '2026년 제주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 우편으로 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전까지 개별 회신 예정
 -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불인정)

9.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0.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1호)	목록별로 제출여부 표시	공통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2호)	(방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첨부(제주시청 종합민원실 판매) (우편접수) 우체국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 5급이상: 1만원, 6급(나급): 7천원, 7급(다급): 7천원, 8 9급(마급): 5천원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공통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해당분야 경력사항만 기재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공통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4호)	A4용지 2매 이내	공통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5호)	A4용지 3매 이내	공통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서식 6호)	응시분야 선택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 표시	공통

구 분	내 용	비고
6. 동의서 (별지 서식 7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동의 여부 기재	공통
7. 동의서 (별지 서식 8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동의여부 기재	공통
8.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해당자
9.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서식 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되며, 현재 근무중인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원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업자등록증등 첨부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해당자
1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 전체기간” 발급 (원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해당자
11.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8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인 경우 해당하며, 병역의무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해당자
12.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별지 서식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해당자
13.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 제출 가능(원본 제출한 경우 희망할 시 확인 복사 후 반환)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해당자
※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등 사용 금지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해외학위, 해외경력 등)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 최종합격자인 경우 사본으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원본을 요구 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운영지침」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내에 응시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제주시 홈페이지(<https://www.jejudi.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제주시 홈페이지(<https://www.jejudi.go.kr>)의 정보공개/채용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총무과 인사팀(☎ 064-728-2063)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제주아트센터 시설관리팀(☎ 064-728-8963)